

행 정 자 치 부

기 관 경 고

제 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부당 처리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부산광역시에서는 금정구 ○○동 ○○-○번지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27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 이하로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은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그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산시 ○○○○과에서는 2015. 5. 15. ○○○○○○주식회사(부산시 기장군 ○○면 ○○○○로 ○○○)가 금정구 ○○동 ○○-○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자 2015. 5. 18. 관련 부서 의견협의를 하였고, 협의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에서는 2015. 5. 20.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5호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 재축이 아닌, 공장 증축, 신축은 불가함'으로 회신하였다. 그리고 2015. 5. 26.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고 2015. 5. 27. 관련 일건서류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후 ○○○○○○주식회사는 2015. 7. 10. 부산시 ○○○○○○과로 공장증설을 위한 행정지원을 요청한 후 2015. 7. 20. ○○○○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였고 2015. 7. 21. ○○○○○○과에서는 ○○○○○○주식회사와의 투자협약 체결 계획을 내세워 관련 부서로 ○○○○○○주식회사 공장 개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²⁹⁾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15. 7. 2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 협의의견 제출 시 명확하게 가부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후 2015. 7. 2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29) ○○○○과에서는 ○○○○○○주식회사와 부산시(○○○○○○과)간 공장 증설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동향보고를 통해 수도권법상 일반공장의 증축은 불가하다고 보고(2015. 7. 14. ○○○○실장)

변경에 대해 8. 3. 기한으로 관련부서에 의견협의를 하였다.

○○○○○○○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요청을 받아 앞서 2015. 5. 18. 협의요청 사항과 동일 건이고 협의내용도 「상수도관리규칙」 제12조제5호에 명확하게 저촉됨으로 이전과 같이 ‘공장의 증축, 신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2015. 7. 30.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설치목적, 공익성 등 제반사항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통보하였으며, ○○○○○과에서는 2015. 8. 1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안)에 대해 내부검토 보고(○○○○실장)를 거친 후 2015. 8. 19.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증축이 불가한 공장 1개동(5,956.37㎡)이 건축되었다.

결국 부산광역시(○○○○○○과, ○○○○과, ○○○○○○○)는 내부검토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줌으로써 건축주 ○○○○○○주식회사가 국방·군사시설과 관련이 없는 일반공장(자동차 부품) 5,956.37㎡이 증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기관경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축이 명백하게 불가능함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부당하게 일반공장이 증축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